

제정: 1999년 2월
개정: 2003년 2월
개정: 2005년 2월
개정: 2010년 2월
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 2020년 1월
개정: 2025년 12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특수교육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전공과목 이수) 석·박사과정 학생은 전공과목 중에서 세부전공과 일치하는 3개 과목 이상(9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4조 (보충과목 이수)

-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은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이수영역의 과목과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박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은 석사과정의 공통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충학점 이수여부 및 이수할 보충과목 선택은 학과 전공교수(및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제 5조(보충과목 이수 면제)

- ①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다(대학원 학칙 제24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
- ② 보충과목 이수대상자 중 석사과정의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의거 특수학교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으로 중복인정되는 교과목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보충과목 이수대상자의 하위 학위과정이 [교육학 관련 전공]인 경우, 해당 전공 과목을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으로 최대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격)

-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18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 이상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27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③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응시자격은 전공 45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제7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특수교육학과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시 1편당 3과목을 면제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게재 시 석사과정은 1편당 2과목, 박사과정은 1편당 1과목을 면제한다.
 - ③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 게재 시 석사과정은 1편당 1과목을 면제한다.
 - ④ 연구실적은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표1>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면제 기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SCI급[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게재	-	1편당 3과목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1편당 2과목	1편당 1과목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1편당 1과목	-

* 면제과목에 연구방법 관련 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 ⑤ 면제 기준 논문은 해당 과정 입학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 ⑥ 종합시험과목에 대한 면제 신청은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1주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학력시험 응시 과목)

-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에서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교수가 담당한 과목으로만 한정하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에서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동일 교수가 담당한 2개 과목 이상으로 한정하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학력시험의 과목은 이수한 전공과목 중 세부전공 2개 과목, 타세부전공 1개 과목, 연구방법 1개 과목(특수교육연구방법 과목은 필수(50점) + 나머지 3개의 연구방법 과목 중 택1(50점))으로 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시행 방법 및 채점)

- ① 종합학력시험 시행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종합학력자격시험 4과목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종합학력시험 중 1과목은 「연구방법론」에 관련된 시험으로, 본 과목을 필수로 응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방법론」 과목의 종합학력시험은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종합시험관리 위원회에서 출제하고 채점하며, 종합시험관리 위원회는 주임교수와 공동과목(특수교육연구방법론) 및 선택과목(실험설계 및 통계, 단일대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의 담당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한다.
- ④ 종합시험관리 위원회는 「연구방법론」 과목의 출제 및 채점 과정의 운영 전반을 검토한다. 필요시 종합시험관리 위원회는 「연구방법론」 과목의 종합학력시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연구방법론」의 시험문제는 공통문제와 선택문제(실험 설계 및 통계, 단일대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로 구성되며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다수의 질문 중 일부를 원생들이 선택하여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 발표된 국내외 논문들을 시험에서 제시하고 이 논문들의 연구방법, 자료 분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⑥ 시험 시간은 과목 당 석사는 90분, 박사는 100분으로 한다.
- ⑦ 종합학력시험 신청자는 시험 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대학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응시과목의 합격점수는 매 과목당 80점 이상으로 한다.
- 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응시자가 응시과목을 신청하여 재시험을 치른다.

제10조 (외국어자격시험 과목 및 면제기준)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 기준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4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취득방법)

- ①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 취득은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논문대체)으로 구분한다.
- ② 석사학위 취득방법을 선택하여 2학기 말까지 학위취득방법 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 선택한 석사학위 취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기 말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제 5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2조 (학위논문의 계획서 발표 및 예비발표)

- ① 학위논문 심사에 앞서 논문계획서 발표(Proposal)와 예비발표(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의 논문계획서 발표는 학위논문의 예비발표에 앞서 시행하는 학과 내의 사전 심사로, 세부 전공별로 실시한다.
- ③ 논문계획서 발표는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시행하되, 예비 발표 학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논문계획서 발표와 예비 발표는 같은 학기에 할 수 없다.
- ④ 석사 및 박사과정의 예비 발표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 이상(박사과정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2인 포함 총 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 발표 결과는 정해진 양식(예비발표 결과 보고서)으로 주임교수에게 보고한다.
- ⑤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논문은 논문계획서 발표일 및 예비발표일 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⑥ 박사과정생의 예비발표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위한 실제적 연구나 자료 수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결과 해석을 제시하고 논의의 진행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⑦ 박사과정생이 예비발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자료 수집 방법에 관계없이 연구 결과물이 모두 수합된 상태이어야 하며, 중재 논문인 경우에는 사후검사 혹은 유지검사 등, 모든 중재와 검사가 끝난 상태이어야 한다. 중간발표 신청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발표를 할 수 없다.
- ⑧ 학위청구논문 심사일 1개월 전까지 예비발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조건)

-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원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1편(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일 경우에만 인정)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제 6조 종합학력시험 면제 인정된 연구실적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조건 연구 실적으로 종복 인정 될 수 있다.

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4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여(위임 포함)와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25. 1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